
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김종양 · 박덕흠 · 박준태
조은희 · 김성원 · 배준영
김소희 · 이달희 · 정동만
이성권 · 정희용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, 목욕장업,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,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온천수를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,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온천 산업의 발전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, 치유목적으로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지는 엄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, 온천지 내 현대적인 휴양시설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하여 입욕 중심의 단조로운 온천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등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,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8조의2 신설 등).
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보양온천을 개발·운영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보양온천을 개발·운영하는 자
2.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「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치유관광시설·산업·사업을 운영하거나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) 온천원보호지구(온천공보호구역에 포함한다)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와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보양온천의 지정) ① (생략)	제9조(보양온천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<u>보양온천을 개발·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	② ----- 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보양온천을 개발·운영하는 자</u>
<u><신 설></u>	2. <u>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「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치유관광시설·산업·사업을 운영하거나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</u>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28조의2(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) 온천원보호지구(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) 안에서</u> <u>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</u>

를」 제77조와 제78조에도 불
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
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
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
적용할 수 있다.